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등록금 전액지원

I. 개요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증가 규모: 4,455백만 원(2019) → 4,835백만 원(2020) → 4,887백만 원(2021)

-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법전원 편제 정원(6,000명)의 15% 수준

-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2.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 지원순위 〉

순 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1순위)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 활용 지원 / (2~5순위)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원

3.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4.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I. 법전원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기준

1. '20학년도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중치	비 고
입학정원의 7%인 경우	1.0	해당 없음
입학정원의 7% 초과 ~ 8% 이하	1.05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건국대,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7교)
입학정원의 8% 초과 ~ 9% 이하	1.1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3교)
입학정원의 9% 초과 ~	1.15	강원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5교)

2. '20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		가중치	비고
30%(이행점검 기준)~ 35% 미만		1.0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6교)
35% 이상 ~ 40% 미만		1.1	서울대, 제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5교)
40% 이상		1.2	강원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4교)

※ 25교 평균 지급률은 34.3%

3. '19년도 대비 '20년도 장학금 지급률 증감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		가중치	비고
증가한 경우		1.1	경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13교)
감소한 경우	2% 미만	0.9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8교)
	2% 이상	0.8	강원대, 제주대, 경희대, 영남대 (4교)

4. 평균 등록금(국공립·사립별)* 대비 법전원별 등록금 수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 국공립대(10개교) : 10,444천 원, 사립대(15개교) : 16,789천 원

구분		가중치	비고
평균 미만	10% 이상	1.15	건국대 (1교)
	5% 이상 ~10% 미만	1.1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서강대, 한국외대 (6교)
	5% 미만	1.05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제주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10교)
평균 초과	5% 미만	0.95	전남대,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4교)
	5% 이상 ~10% 미만	0.9	성균관대 (1교)
	10% 이상	0.85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교)

5. '20년도 대비 '21년도 등록금 동결·인상 여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	가중치	비고
'20년 대비 등록금 유지	1.0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24교)
'20년 대비 등록금 인상	0.9	전남대 (1교)

6.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따른 가중치 부여

– 해당 대학, 법학교육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가중치를 설정하여 별도 안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의무화

Ⅲ.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

(단위 : 명, %, 천 원)

구분	대학명	편제정원	기초~소득 3구간 이하 학생 수	'21년 배정금액
국공립	강원대	120	22	92,029
국공립	경북대	360	51	223,196
국공립	부산대	360	65	357,614
국공립	서울대	450	50	159,426
국공립	서울시립대	150	27	155,299
국공립	전남대	360	62	241,988
국공립	전북대	240	34	133,338
국공립	제주대	120	14	49,015
국공립	충남대	300	58	217,570
국공립	충북대	210	36	135,043
사립	건국대	120	26	240,402
사립	경희대	180	30	145,489

사립	고려대	360	28	167,057
사립	동아대	240	52	383,250
사립	서강대	120	19	140,033
사립	성균관대	360	48	303,230
사립	아주대	150	20	119,701
사립	연세대	360	41	191,046
사립	영남대	210	42	236,382
사립	원광대	180	38	239,561
사립	이화여대	300	43	272,261
사립	인하대	150	17	131,558
사립	중앙대	150	19	133,668
사립	한국외대	150	20	120,603
사립	한양대	300	39	248,241
계		6,000	901	4,837,000

※ 사업관리비 50,000천 원은 한국장학재단에 별도배정